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73호) 주요 개정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제도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빈개발도상국(이하 '최빈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목적

- 최빈국의 무역역량을 강화 및 경제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최빈국의 절대 빈곤 완화
- 최빈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 확대 혜택 부여

II.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 연장

2. 주요 내용

-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시한 2024년 2월 11일까지 연장

기존	개정안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1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에 대하여 적용한다.

III.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1년 4월 8일

○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참조: 다자관세팀)
- 전자우편: yoocho9078@korea.kr
- 전화번호: 044-215-4467
- 팩스: 044-215-8077

IV.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 Contact



양다운 관세전문가
T 02-6011-3056
E dyyang@esein.co.kr



남근혜 컨설턴트
T 02-6011-3076
E khnams@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